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전재수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업종을 신설하는 등 내용으로 「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」이 개정(법률 제19910호, 법률 제20950호, 2025. 4. 22 공포, 2025. 10. 23. 시행)됨에 따라, 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권한의 위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설에 따른 조항, 용어 등 정비
(안 제22조, 제44조제2항·3항)
- 나. 해양심층수 관련업자 행정처분 권한의 위임 조항에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추가(안 제45조제2항제3호)
 - 시·도지사에 위임한 해양심층수 관련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의 대상에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를 포함함
- 다.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추가(안 제46조 [별표2]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40일간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비대상

대통령령 제 호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27조제5항”을 “법 제27조제8항”으로 한다.

제44조제2항 중 “제조업자등”을 “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,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(이하 “먹는해양심층수 관련업자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조업자등은”을 “먹는해양심층수 관련업자는”으로 한다.

제45조제2항제3호 중 “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·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·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”를 “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·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·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·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2조(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조건)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<u>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.</u> 1.·2. (생략)	제22조(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조건) ----- ----- ----- ----- <u>법 제27조제8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1.·2. (현행과 같음)
제44조(광고의 제한) ① (생략)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광고 제한이 시작되는 날 3개월 전까지 그 내용을 해당 <u>제조업자등</u> 에게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③ 제1항에 따른 광고 제한에 이의가 있는 <u>제조업자등</u> 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	제44조(광고의 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,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(이하 “먹는해양심층수 관련업자라 한다)</u> ----- ----- ③ ----- ----- <u>먹는해양심층수 관련업자</u> 는 ----- -----

의신청을 할 수 있다. ④·⑤ (생략) 제45조(권한의 위임) ① (생략)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한다. 1.·2. (생략) 3.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관련업 사업자 중 <u>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·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·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(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)·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(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)의 영업활동에 대한 조사 및 보전조치·시정조치 명령</u> 4. ~ 6. (생략)	----- ④·⑤ (현행과 같음) 제45조(권한의 위임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<u>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·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·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·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4. ~ 6. (현행과 같음)
---	--

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2] <개정 2019. 10. 22.>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46조 관련)

위반행위	해당 법조문	과태료
5. 법 제27조제9항 또는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8조제1항제3호	300만원
6. 법 제27조제9항 또는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	법 제58조제1항제3호	500만원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245